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09호

「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,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금리를 인상하고,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며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인상(안 제2조제1항)

- 1)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0%에서 연 2.3%로 인상
- 2)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5%에서 연 2.8%로 인상

- 3)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8%에서 연 3.1%로 인상

나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구체적 이자율을 명시(안 제2조제2항)

- 1)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연 3.7%
- 2)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4.2%
- 3)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연 4.5%

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(안 제3조제2항)

- 1)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 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허용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
- E - mail : jeongmin89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 044-201-3344, 33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